

교과과정 편성 규정

제정 1999. 03. 01	개정 2000. 08. 16
개정 2002. 03. 01	개정 2003. 03. 01
개정 2004. 03. 01	개정 2005. 03. 01
개정 2006. 03. 01	개정 2008. 03. 01
개정 2009. 03. 01	개정 2010. 02. 18
개정 2013. 02. 28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02. 09	개정 2017. 08. 28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06. 25
개정 2018. 10. 29	개정 2019. 04. 29
개정 2019. 08.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함)학칙 제26조와 학칙시행세칙 제83조에 의거하여,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서의 원칙, 개념, 편성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교육의 목적과 목표) 본 대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과교육과정의 목적은 인간화와 전문화에 두며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간화 : 가. 전인적 인격 형성
 - 나. 민족적 주체성 배양
 - 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태도 함양
2. 전문화 : 가. 첨단 학문과 기술에 대한 이해
 - 나. 실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능력 배양
 - 다. 열린 세계경영시대의 소양 배양
 - 라. 정보의 이용과 창출 능력 배양

제3조 (교과과정 편성 원칙) ① 교과과정 편성은 교육목적과 산업현장 및 학생의 요구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최적의 체제 구축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다변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능동적 개발한다.
 - 학과(부)제의 통합커리큘럼 운영, 연계·융합전공의 개발,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의 활성화, 실용·실습중심의 교과운영, 전부·전공변경의 수월 등 (개정 2013. 3. 1, 개정 2018. 2. 7)
 2. 산업현장과 학생요구를 충족하는 교과를 개설한다.
 - 교수편의·기득권 중심의 편성 배제, 교과 선택권 확대, 기업체 자문을 통한 교과 개폐 등
 3. 전공별 코스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 경쟁 우위성의 교과내용, 권장 코스 개발, 어학·전산능력 배양
 4. 올바른 인격 함양과 전문사회인으로서의 보편적 양식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 교과를 제공한다.
 - 정서 함양 및 가치관 형성, 실생활 연계 교과 우선 개설
- ②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을 공통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에 학습하는 직장인 의

경우 원만한 학습활동 및 현장과 연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직장인 교과과정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교양교과과정의 목표와 편성 원칙) 교양교육의 목적은 인격적 기반을 형성하고, 전문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함양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교양교과과정을 편성한다.

1. 인격적 기반 형성 : 가. 삶과 세계에 대해 이해
나. 전인적 인격 형성
다. 개성과 특기의 개발
라. 민족적 주체성의 배양
마.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태도 함양
2. 전문가적 자질 함양을 위한 기반 형성
가. 과학적 사고력 배양
나. 외국어 구사 능력 증대
다. 정보통신 활용 능력 배양

제5조 (전공교과과정의 목표와 편성 원칙) ① 전공교과과정은 해당 학과(부) 및 전공의 특성적인 교육목적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 3. 1)

②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이론과 기술력, 전문적 식견과 응용능력을 길러 전문적 직무수행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편성한다.

제6조 (교과과정의 적용) 입학년도에 적용된 교과구분별 졸업최소이수학점은 해당학생의 졸업시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교과과정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교과 또는 최소이수학점 대체 인정 과정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학과(부)나 전공의 통합·신설·폐지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7조 (교과과정의 개편주기) 교과목의 신설, 폐지, 명칭과 학점의 변경은 2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8조 (교과 구분별 구성비) 교과별 구성비는 학과(부) 및 전공별 특성과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이수학점을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다양하게 편성하되 졸업최소이수학점에 대한 최소 및 최대 편성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 및 보건계학과, 직장인 교과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최소이수학점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1. 교양 교과 : 최소 25% ~ 최대 35%
2. 전공 교과 : 최소 35% ~ 최대 55%
3. 일반(자유)선택 교과 : 최소 15% ~ 최대 45%

제9조 (필수와 선택의 구성비) ① 필수과목은 각 학문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들로서 전공 학문의 기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와 일반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적정선에 편성하되, 교과구분별(교양, 전공) 최소이수학점의 3분의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이수 학점에 대

한 총 필수 비율은 50% 미만으로 한다.(단, 의료보건계열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개정 2018. 10. 29)

② 선택과목은 필수과목과 연계된 분야 및 전공의 새로운 연구결과가 반영된 폭넓은 내용들을 포함한 과목들로서 사회 또는 산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학생들이 학문적 혹은 실질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③ 학과(부)와 학생의 특성에 따라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여 복수 전공 이수가 수월하도록 필수를 최소화 내지 폐지할 수 있으며, 필수교과를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2 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④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필수교과를 지정하지 않거나 제1전공학생의 필수교과학점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1)

제10조 (교양교과과정의 편성 기준) ① 인문과학(언어, 문학, 철학, 역사 등), 사회과학(행정, 법학, 사회문제, 국제사회 등), 자연과학(과학, 환경, 기술, 산업 등), 예술 및 체육 등 균형적인 교과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교양필수 교과는 공통교양과 기초과학 영역으로 구분하고, 학과별로 지정한 영역별로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개설 확보 차원에서의 교양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9)

1. '교양교육' 목표 달성과 관련한 교과 : 봉사를 통한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인격완성을 위하여 최소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교과를 둔다. (개정 2018. 2. 7)

2. '민족교육' 목표 달성과 관련한 교과 : 전통문화와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어'와 '한문' 관련 교과를 둔다.

3. '전문교육' 목표 달성과 관련한 교과 : 정보화, 세계화, 전문화시대에 대응한 '컴퓨터 운용' 관련 교과와 '외국어' 관련 교과를 두며,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학과의 경우 학문적 또는 전문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기초 과학'교과를 둔다. (개정 2016. 12. 29)

④ (삭제 2016. 12. 29)

⑤ 교양선택 교과는 외국어영역, 융복합영역, 취업창업영역 및 문화와과학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골고루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하여 수강을 권장한다. 단, 외국어영역은 별도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적용 학점은 각각의 외국어과목을 이수한 학점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제11조 (전공교과과정의 편성 기준) ① 전공교육과정은 각 학문의 교육목적, 학문의 성격, 산업의 발전 동향, 졸업생의 진로, 교과목간의 균형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별 통합교과과정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과(부)통합교과과정표(별지 서식 1)는 학생 전공교육과정 설계나 교과 수강 체계를 안내하기 위하여 전공코스권장 표시(별지 서식1의 예)와 복수전공, 부전공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공교과 최대편성학점은 전공최소이수학점의 1.5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편성 학점의 25% 이상이 동일학과(부) 내 전공 간에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9. 8. 26)

④ 학기마다 개설되는 교과목 중 전공 당 3학점 이상의 공통 수강 교과가 실질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전공 단독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의 총 학점은 전공최소이수학점과 일반(자유)선택 학점의

합을 초과할 수가 없다.

⑤ 유사과목은 통폐합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과목을 전공별로 학기가 다르게 편성하거나, 주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세분 또는 통폐합하여 별도로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⑥ 학년 단계별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과(부) 공통 필수는 4학기 이전에 2개 교과 이상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학과(부)영역필수(복수 교과를 개설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과(부)필수로 이수하는 교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1)

2. 전공학문 이수에 초석이 되는 전공기초는 저학년에, 전공심화 및 응용과목은 고학년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체계와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유도한다.

3. 전공학문의 세부분야와 분야별 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년과 학기에 순차적으로 편성·개설하되, 7학기부터는 이론만의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설강 할 수 없으며, 최종학기에는 현장실습, P/F제 교과목 외의 필수과목은 둘 수 없다.(단, 의료보건계열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2. 18)

4. 학과(부)(전공)에 따라서는 선수 및 후수 과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의 체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충분한 선후 이수의 당위성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3. 3. 1)

5. 각 전공의 고유한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과(부) 내에서의 전공 간에는 물론 인접 관련 전공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선택 기회를 확대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13. 3. 1)

6. 교육실습, 현장실습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과(부)의 내규로 정하여 실시하되,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하고 1주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7. 별도 협약에 의한 직무교육을 8차 학기에 전공선택 교과로 편성할 수 있으며, 1학점당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 8. 28)

8. 전공 실무역량의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인문사회계열은 10% 이상,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은 30% 이상, 예체능계열은 60%이상 실무,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을 학기별로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6)

제12조 (직장인 등의 교과과정 편성) ① 직장인 교과과정은 재직자, 전업주부 및 만 3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2. 29)

②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서 직장인 교과과정을 적용 받고자하는 사람은 입학일 또는 편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한 신청원(별지 서식 2호)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전업주부 및 만 30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2. 29)

③ 재학 중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수료 전까지 사전에 직장인 교과과정 이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취업일 이후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재직증명서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한 신청원(별지 서식 2호)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직장인 교과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18. 2. 7)

④ 직장인 교과과정에서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은 두지 아니하며, 학칙시행세칙 38조와 관련된 현장실습 또는 실무연수는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학칙시행세칙 제21조6항(직장인 직무관련 교과 학점 대체 인정 등은 총 16학점 범위 내 학

기당 6학점까지 인정)과 관련한 학점 부여의 절차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과목 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내 해당교과교수(교과 미 개설 시는 주임 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2. 학점의 부여는 해당 학기 간에 이루어진 '직무수행보고서' 및 교과교수가 지정하는 '교과 내용과 직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아 해당교과교수(또는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교무처에 학점 인정 요청(<별지 서식3>)을 한다. (개정 2013. 3. 1)
3. 평점은 B+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교과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특허, 도 단위 이상의 수상 등이 있는 경우 A+까지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 ⑥ 학칙시행세칙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등 직장인 교과과정을 적용받은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유고결석포함)할 경우 해당 과목 학점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8. 28)

제12조의2 (외국인 교과과정 편성) ① 외국인 교과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7. 2. 9)

- ② 외국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양 및 전공 필수 과목은 두지 않는다. (신설 2017. 2. 9)

제13조 (교과과정의 편성 절차) ① 최소졸업이수학점 조정, 필수교과의 지정과 변경, 신학년도의 교과과정의 편성은 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각 분과(학과(부), 전공, 교양)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안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3. 3. 1)

- ② 이외의 선택과목 개설과 변경, 대체과목과 선수과목의 지정은 분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3. 3. 1)
- ③ 교무처장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양선택 및 일반 선택 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및 담당학과(부)(전공)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하거나 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 ④ 학점변경, 명칭변경, 개설학기 변경,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전항의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14조 (교과의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은 1학기 30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론·실습 혼합 교과목 등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강의시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제15조 (교과목명과 교과목번호) ① 교과목명은 한글로 10자 이내로 한다.

- ②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는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I,II,III,IV..... 로 표시한다.
- ③ 교과목 번호는 교무처와 전산실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되,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3. 3. 1)
- ④ 이미 부여된 교과목번호는 고유번호이며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제16조(보칙) 이외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10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단, 제10조 제5항은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2>

창조·자율·봉사

직 장 인 교 과 과 정 적 용 신 청 원	결	담 당	교무팀장	교학과장	교학부처장	교무처장
	재					

- 1. 소 속 : 학과(전공)
- 2. 입 학 년 도 : 학년도 학년 (신입학, 편입학)
- 3. 학 번 :
- 4. 성 명 :
- 5. 주민등록번호 :
- 6. 직장명(연락처) : (Tel.)
부서 및 직위 :

- * 첨 부 : 1. 재직증명서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위와 같이 직장인 교과과정 적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 인 : (인)

교무처장 귀하

경 유	소속학과(부)(전공)승인		전 산 정 리 필
	지도교수	학과(부)장	

